



# 라이나손보

A Chubb Company  
에이스손해보험의 새 브랜드입니다.

보험금 청구서류 우편접수  
03187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 
광화문우체국 사서함 386(서린동)

라이나손해보험  
(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),  
처브그룹 컴퍼니  
03156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 
라이나타워 14, 15층

대표번호+82 2 1566 5800  
www.chubb.com/kr

라이나손해보험은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브랜드명으로, 라이나생명과 독립된 계열회사입니다.

## 보험금 청구서 [재물 / 배상책임]



QR코드 촬영으로  
보험금청구서 작성 없이  
청구가 가능합니다.

### 보험금 청구관련 정보

청구자	성명	주민번호	-	연락처	
피보험자	성명	주민번호	-	연락처	
	주소				하시는일
보상관련 안내	<input type="checkbox"/> 보험계약자 <input type="checkbox"/> 피보험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익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성명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관계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연락처 :				
	안내방법	※ 반드시 한가지는 선택( <input type="checkbox"/> 안에 v표)해 주시기 바랍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SMS <input type="checkbox"/> e-mail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@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선(전화) <input type="checkbox"/> 우편 <input type="checkbox"/> 안내거부			

▶ 직업 사항은 필수 기재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.

다른 보험회사 계약사항(손해보험, 생명보험, 공제 및 단체보험)  있음  없음

보험회사	<input type="checkbox"/> 삼성 <input type="checkbox"/> 현대 <input type="checkbox"/> DB <input type="checkbox"/> 메리츠 <input type="checkbox"/> 한화 <input type="checkbox"/> 흥국 <input type="checkbox"/> 롯데 <input type="checkbox"/> 농협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
------	--

사고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재물손해 <input type="checkbox"/> 배상책임	접수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접수 <input type="checkbox"/> 추가접수
사고일시	20    년    월    일 (    :    )	사고장소	
사고내용			
피해자		연락처	
피해정도			

### 보험금 수령계좌 (보험금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)

예금주	예금주 주민번호	-	하시는일
은행명	계좌번호		

▶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4에 의하여 상기 정보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확인 및 검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 제공하신 정보는 동법에 의거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, 정보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문서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정보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법에 의거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 될 수 있습니다.

※ 보험사기(고의사고, 허위사고, 피해과장, 허위입원·진단·장해, 사고 후 보험가입 등)는 범죄이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귀하는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조회,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,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개인(신용)정보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다만, 본 동의는 '보험금 청구'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
1.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<b>수집·이용 목적</b>	보험사고·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·심사(손해사정 또는 의료자문 포함)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및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, 금융거래 관련 업무 자동차과실비율분쟁심의업무(자동차보험에 한함)
<b>보유 및 이용기간</b>	<b>동의일로부터 거래 종료 후 5년까지</b> <b>(단,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 상의 보존기간을 따름)</b>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"① 보험계약 만기, 해지, 취소, 철회일 또는 소멸일, ②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(상법 제662조), ③ 채권·채무 관례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"을 말한다.

<수집·이용할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>

**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**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

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

**민감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**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

피보험자의 질병·상해에 관한 정보(진료기록, 상병명 등), 보험사고 조사 (보험사기 포함)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(경찰, 공공·국가기관,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, 증명서,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(신용)정보 포함)

**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**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

일반개인정보 : 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이메일, 유·무선 전화번호, 성별, 국적, 직업,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, 국내거소신고번호

신용거래정보 :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(보험금 지급계좌 등), 보험계약정보(상품종류, 기간, 보험가입금액 등), 보험금 정보(보험금 지급사유, 지급금액 등)

2. 개인(신용)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

<p>제공받는 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: 한국신용정보원</li> <li>- 보험회사 등 : 생명·손해보험사, 국내 재보험사, 공제사업자, 체신관서(우체국보험)</li> <li>- 공공기관 등 :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국세청, 국토교통부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법령상 업무수행기관 (위탁사업자 포함)</li> <li>- 금융거래기관 : 계좌개설 금융기관, 금융결제원</li> <li>- 계약관계자 : 피보험자, 보험금 청구권자</li> <li>- 보험협회 등 : 생명·손해보험협회</li> </ul>
<p>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: 개인(신용)정보 조회,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, 교통사고처리내역발급간소화 서비스</li> <li>- 보험회사 등 :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, 재보험금 청구</li> <li>- 공공기관 등 :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(위탁업무 포함)</li> <li>- 금융거래 기관 : 금융거래 업무</li> <li>- 계약관계자 : 손해사정 내용 관련 정보 제공</li> <li>- 보험협회 : 보험금 지급·심사 관련 업무지원(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서비스 등)</li> </ul>
<p>보유 및 이용기간</p>	<p>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달성할 때까지 (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)</p>

\*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지점이 재보험금 청구 등 지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외국 소재 본점에 귀하의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.

<제공할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>

<p><b>고유식별정보</b> 제공에 동의하십니까?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</p>
<p>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</p>	

<p><b>민감정보</b> 제공에 동의하십니까?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</p>
<p>피보험자의 질병·상해에 관한 정보(진료기록, 상병명 등), 보험사고 조사 (보험사기 포함)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(경찰, 공공·국가기관,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, 증명서,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(신용)정보 포함)</p>	

<p><b>개인(신용)정보 제공*</b>에 동의하십니까?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</p>
<p>일반개인정보 : 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이메일, 유·무선 전화번호, 성별, 국적, 직업,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, 국내거소신고번호                  신용거래정보 :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(보험금 지급계좌 등), 보험계약정보(상품종류, 기간, 보험가입금액 등), 보험금 정보(보험금 지급사유, 지급금액 등)</p>	

\* 업무위탁을 목적으로 개인(신용)정보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업무 수탁자에게 귀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(당사 공식 홈페이지 [www.chubb.com/kr](http://www.chubb.com/kr) 에서 확인 가능)

3. 개인(신용)정보의 국외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
제공받는자	국외 재보험사
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	재보험금 지급·심사
보유 및 이용 기간	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(관련 법령 상 보존기간을 따름)

<국외 제3자 제공할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>

국외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
--------------------	---

일반개인정보 :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연령

신용거래정보 : 보험계약정보(보험종목, 상품명, 보험기간, 보험가입금액 등), 보험금 정보(사고번호, 사고일자, 지급일자, 보험금 조사비용, 지급금액 등)

4. 개인(신용)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

조회대상기관	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, 생명·손해보험협회, 보험요율산출기관, 국토교통부
조회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: 보험사고·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 지급·심사,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</li> <li>- 생명·손해보험협회 :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</li> <li>- 보험요율산출기관, 국토교통부 : 보험사고, 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, 법령에 의한 업무수행 등</li> </ul>
조회 동의의 효력기간	해당 보험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

<조회할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>

고유식별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
--------------------	---

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

민감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
------------------	---

피보험자의 질병·상해에 관한 정보(진료기록, 상병명 등, 교통법규 위반정보, 교통사고조사기록(당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))

개인(신용)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
----------------------	---

일반개인정보 : 성명, 국내거소신고번호, 면허의 효력에 관한 정보

신용거래정보 : 보험계약정보(상품종류, 기간, 보험가입금액 등), 보험금 정보(보험금 지급사유, 지급금액 등)

동 의 일	20    년    월    일
본인	(서명)
법정대리인	(서명)

※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후 친권자가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.

라이나손해보험은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브랜드명으로 라이나생명과 독립된 계열회사입니다.

## 보험금지급절차 안내

### 1. 보험금 청구 안내

- 1) 보험금 받으실 통장이 피보험자 본인이 명의가 아닌 경우, 별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2) 단,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임장 없이 친권자(부모)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.(가족관계증명서 제출)
- 3) 상기 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드리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.
- 4) 경우에 따라 손해사정을 위한 현장심사가 필요할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.

### 2.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안내

- 1) 보험금 청구 서류를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(상법 제662조)됩니다.

### 3.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

- 1) 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당사에 접수되는 경우 보상처리 담당자가 지정되며 SMS를 통해 접수번호와 담당자 성명, 연락처가 통보됩니다.
- 2) 보험금 심사결과에 따라 정상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상처리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문자서비스로 승부된 담당자나 고객센터(1566-5800)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(상담가능시간: 09:00~18:00)  
사고접수 및 절차 안내 → 청구서류안내 → 청구서류 접수 → 보상심사 및 사고조사 → 보험금 결정 및 지급 → 지급안내
- 3) 예상 심사 기간은 상해, 질병보험은 최종 서류 접수 완료 후 3영업일, 기타 보험은 보험금 산정 후 7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 기준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가 보험금과 같이 지급이 됩니다.

### 4. 손해사정사 선임권 안내

보험금 청구권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9-16조 제2항 1호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.

#### 보험업감독규정

- 제9-16조(보험계약자들의 손해사정사 선임) 보험계약자들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의한다.
- ①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을 때
  - ②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
  - ③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들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
  - ④ 보험계약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

#### [비용안내]

상기 ①, ②의 경우에는 당사가 비용을 부담하며 ③, ④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(보험계약자등)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

#### [기타사항]

- 보험금 청구권자가 3영업일 이내에 상기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따른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당사가 위탁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진행합니다.
-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(2019.07.19.)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수 있으며, 세부적인 거부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.

#### [선임요청에 대한 동의 및 부동의 기준]

- 회사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통보를 한 경우에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의를 한다.
  - ① 보험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전문보험계약자의 계약. 다만, 실손의료보험계약을 포함하는 단체보험상품 및 여행 보험 상품은 해당되지 아니한다.
  - ②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보험계약.
  - ③ 보험금청구권자가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사정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
  - ④ 보험금청구권자가 선임 의사를 통보한 손해사정사가 건전한 금융질서(보험사기 의심, 부당한 민원유발, 변호사법 위반등)를 해질 소지가 있는 경우
  - ⑤ 손해사정사가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서 주관하는 손해사정 관련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.
  - ⑥ 소비자가 선임 요청한 손해사정사가 당사의 손해사정 보수기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
  - ⑦ 소비자가 선임 요청한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금 수익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.
  - ⑧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인 경우.
  - ⑨ 계약 체결에 하자가 있어 판매 조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.
  - ⑩ 기타 객관적으로 손해사정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.

### 5. 장애진단서 제출시 유의사항

- 1) 장애진단서를 제출시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(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)에서 진단을 요청 드리며 병원 진단전에 고객센터(1566-5800)로 상담 요청을 하시면 담당자와 상담을 받으실수 있으며,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.
- 2) 고객님의 진단받은 장애에 대하여 사고에 따라 전문의에 의한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질수 있으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.

### 6. 의료심사

- 1) 보험금 심사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, 치료관련 기록등의 서류를 기초로 해당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.

### 7.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 안내(비례보상)

- 1) 상해 /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별로 보험금을 지급할수 있습니다.
- 2) 다른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확인하실수 있습니다.
- 3) 비례보상이 되는 담보는 의료비, 벌금, 교통사고합의비용, 일상생활배상 책임담보가 대표적이며 상세한 내용은 가입 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요

### 8. 손해사정사 교부 안내

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 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, 그 손해사정서는 보험업법에 따라 계약자, 피보험자, 청구권자(수익자)에게 교부됩니다.

### 9. 보험금 지급지연 및 가지급제도 안내

- 1) 「국민건강보험」 및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요양(의료)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사전 또는 사후 환급 받을수 있으며,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.
- 2) 보험금 심사과정에서 본인부담금 초과금액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

### 10. 보험금 지급지연 및 가지급제도 안내

- 1) 보험금 처리가 지연된 경우, 지연안내장이 발생되며 해당상품의 약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.
- 2) 보험소비자가 개인(신용)정보처리 또는 의료심사 등의 동의를 거부하거나,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 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 할 수 있습니다.
- 3)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, 확인하기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,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% 이내의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### 11. 보험금 지급 안내 및 심사절차 조회 방법 안내

- 1) 보험금이 지급 또는 부지급이 되는 경우 고객님의 연락처로 유선안내 또는 e-mail, SMS로 사고 접수 시 동의하신 방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 내역을 안내해 드립니다. 다만, 부지급 결정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담당자 또는 소비자보호팀에 통보하여 주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- 인터넷 접수: 홈페이지 내 고객의 소리
  - 유선문의 : 1566-5800
  - 우편접수 : 03187 서울시 중로구 중로6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386(서린동)
- 2) 회사 홈페이지(www.chubb.com/kr)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(단, 공인인증서를 통해 서면 조회가능)